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6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3

I. 개요

1. 김소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96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소회의원 등 21인
- (2) 제 안 일 : 2024. 8. 20.
- (3) 회 부 일 : 2024. 8.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는 ① 일반 R&D 세액공제와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③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계산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증가분 방식’은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대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이 적용되는데,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성장·원천기술¹⁾은 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생략)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20~30%를 공제하고,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40%를 공제하며, 코스닥상장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5~40%를 공제함.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하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²⁾로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이 10%p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30~40%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40~50%를 공제받음.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¹⁾
	대	중견	중소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15 ²⁾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주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2) (중소기업 졸업 후 ~3년)15%, (중소기업 졸업 후 4~5년)10%, (중소기업 졸업 후 6년~)8%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10개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제1호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여 신설되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전후 비교]

종 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며, 세액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인데 토지와 건축물 등은 제외됨. 또한, 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과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임.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됨.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이 대기업 1%·중견기업 5%·중소기업 10%이며,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6%·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5%·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임.

일반 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은 3%이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은 4%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4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한편, 그동안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법률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되었음.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술 현황]

구분	분야	기술
미래형자동차	자율 주행차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전기 구동차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지능정보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기술, 언어이해 기술 등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IoT 네트워크 기술, IoT 플랫폼 기술 등
	클라우드(Cloud)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 및 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등
	착용형 스마트기기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관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등
	IT 융합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등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등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등
	스마트 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등
차세대소프트웨어 (SW)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서비스·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등
	융합보안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등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등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제조 기술 등
	반도체 등 소재·부품	포토리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등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등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등
차세대 방송통신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5세대(5G) 및 6세대 (6G)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등
바이오·헬스	UHD (Ultra-High Definition)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등
	바이오·화합물의약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등
	의료기기·헬스케어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등
	바이오 농수산물·식품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등
에너지·환경	바이오 화학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등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발전시스템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등
	원자력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등
	오염방지·자원순환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등

구분	분야	기술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초경량 금속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등
	구리합금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등
	특수강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등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등
	희소금속·소재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등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고정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등
	안전로봇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등
	의료 및 생활 로봇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등
	로봇공통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등
	우주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첨단 소재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등
	첨단 부품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등
	첨단 장비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등
탄소중립	탄소포집·활용·저장(OCUS)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수소	부생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산업공정	합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등
	에너지효율·수송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방위산업	방산장비	추진체계 기술 등
	전투지원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24. 2. 29. 개정)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현황]

분야	기술
반도체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제조기술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BCDMOS, UHV, 고전압 아날로그IC) 설계·제조기술(0.35 μ m이하)
	차세대 디지털기기·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분야	기술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포토리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파운드리용 IP 설계 및 검증 기술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백신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친환경 QD(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분야	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미래형 이동수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2024. 2. 29. 개정)

R&D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20년 2조 7,340억원에서 2023년 4조 6,30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3조 99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910	954	1,057	1,081	1,013	1,080
법인세	26,430	26,342	36,173	45,221	28,562	29,910
합 계	27,340	27,296	37,231	46,302	29,575	30,990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은 2020년 6,226억원에서 2023년 2조 79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기업 실적회복으로 2025년에는 4조 2,88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217	491	810	1,036	1,269	1,295
법인세	6,009	12,969	21,187	19,764	16,134	41,590
합 계	6,226	13,459	21,997	20,799	17,402	42,883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023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1,660개가 1조 5,150억 1,800만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718개가 3조 70억 4,000만원을 신고했음.

[2023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4,370	26,931	1	11
20억원 이하	6,119	56,352	4	36
50억원 이하	11,814	203,843	17	536
100억원 이하	8,470	254,558	32	1,665
200억원 이하	5,506	278,567	57	2,980
300억원 이하	2,090	160,621	44	2,761
500억원 이하	1,797	198,988	93	7,155
1,000억원 이하	1,169	229,272	171	26,106
5,000억원 이하	324	102,498	872	319,207
5,000억원 초과	1	3,388	427	2,646,583
합계	41,660	1,515,018	1,718	3,007,040

자료: 국세통계포털

2023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8,926개가 4,013억 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752개가 1조 3,789억 200만 원을 신고했음.

[2023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1,063	2,172	2	104
20억원 이하	874	3,752	2	84
50억원 이하	1,744	16,690	9	80
100억원 이하	1,392	28,987	22	240
200억원 이하	1,520	59,975	76	2,187
300억원 이하	789	48,214	52	2,327
500억원 이하	757	70,227	98	3,921
1,000억원 이하	610	102,277	219	12,769
5,000억원 이하	u	56,247	833	138,317
5,000억원 초과	u	12,759	439	1,218,875
합계	8,926	401,300	1,752	1,378,902

자료: 국세통계포털

나.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김소희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유형별 공제율					○ 유형별 공제율
					-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 상향: 대 15%, 중견 20%, 중소 25%
					* 적용기한: 2030.12.31.

* 김소희의원안 2024. 8. 20. 발의(의안번호 2962)

☐ 개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 등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을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 일반 기업 15%로 2030년 말까지 상향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시행 2022. 3. 25.)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여 UN에 제출한 상황임.

- 개정안은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탄소배출 저감 등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탄소중립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2021년)에 따르면 탄소중립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7.1%에 불과하였으며,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 중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³⁾

이에 탄소중립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도 탄소중립 관련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탄소 포집·활용·저장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일반투자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탄소중립 기술은 2022년부터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이

3) 중소기업중앙회, 「2050년 탄소중립 관련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21. 11.

와 관련된 시설투자는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로서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일반 기업 3%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

둘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⁴⁾에 대해 탄소중립시설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예산규모는 722억원이며, 지원설비는 탄소무배출설비·탄소포집설비·연료 전환설비 등임. 사업장별 연간 1,000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2년 간 지원이 가능함.

문 의 처

02)6788-5155

4) 2024년 4월 기준 783개 업체가 해당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한다.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 -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 -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나.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관리하여야 한다.